

임원 직무청렴의무 규정

[제정 2009. 5. 29.]

[개정 2013. 8. 30.]

[개정 2014. 2.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원이 준수해야 할 직무청렴의무(이하 “청렴의무”라 한다)와 위반시 받는 제재를 사전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부패방지 및 직무윤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투명 경영과 신뢰경영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 청렴의무 준수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진흥원의 임원(상임, 비상임)에게 적용하며 부설기관의 임원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2.28)

제2장 청렴의무 준수

제4조(청렴의무) ① 임원은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 규정 등에 금지된 사항
2.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3.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4.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5.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6.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7. 기타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해당기관 사업 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8. 성희롱, 선거개입행위 등 관련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
9. 자기거래 등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개정 2014.2.28)
10. 기타 규정 및 행동강령 등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신설 2014.2.28)

제5조(계약의 시기 및 기간) ① 진흥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 임원이 임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에 규정된 의무의 준수기간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관련 사항은 재직기간 이후를 포함할 수 있다.

제6조(계약체결의 당사자) ① 원장은 선임비상임이사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14.2.28)

② 비상임 임원은 원장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신설 2014.2.28)

제3장 청렴의무 위반 심의

제7조(청렴의무 위반심의) ① 이사회는 임원이 재직기간동안 청렴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위반여부 및 제재수준 등을 심의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청렴의무 위반 혐의 내용이 임원 재직기간 동안 발생하였는지 여부
2. 위반 혐의 내용이 임원 직무청렴계약서의 청렴의무 준수사항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3. 위반 혐의 내용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4.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5. 진흥원의 이미지 실추 및 청렴한 조직문화 훼손 여부
6. 진흥원의 이익침해 또는 손해발생 여부
7.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규정 및 사회인식 등으로 인한 행위의 불가피성을 고려한 정상참작 사유

- ③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위반여부 심의요청은 감사 또는 이사가 개별적으로 이사회에 할 수 있다.
- ④ 임원이 청렴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일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이사회 담당부서장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의거 보고를 받은 이사회는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된 경우에는 형 확정시까지 제10조의 제재사항이 자동 심의, 의결된 것으로 한다.

- 제8조(의견청취)** ① 이사회는 위반사항을 심의할 때 해당임원에게 출석을 통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임원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해당임원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 청취 없이 심의할 수 있다. 해당임원의 해외 체재 등의 사유로 30일 이내에 의견을 청취할 수 없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③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진술을 듣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④ 의결절차 및 방법은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3.8.30)

제4장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 제9조(위반시 제재)** ① 임원이 청렴의무 위반시 받는 제재는 인사규정을 포함한 진흥원 관련 제규정에 따른 징계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 ②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진흥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임원이 퇴직 후에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청렴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도 동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제10조(제재수준)** ① 청렴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주의 : 서면으로 경고 또는 훈계한다.
 2. 임원경력확인발급 정지 : 임원경력확인발급을 일정기간 정지한다.

3. 포상정지 : 임원 재직기간 중 포상을 일정기간 정지한다.
4. 포상취소 또는 취소건의 : 임원 재직기간 중 받은 포상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건의한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영평가 인센티브 성과급(이하 “성과급”이라 한다) 지급중지 및 환수 :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중지 또는 환수한다.
6. 해임건의 : 임면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한다.
 - ② 임원이 청렴의무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처벌의 정도에 따라 경제적, 부가적 제재를 [별표]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
 - ③ 제재 수준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바에 따른다.
 1. 지급유보, 제한 및 취소시 : 유보, 제한 및 취소 사유, 대상금액, 해제요건 등
 2. 환수시 : 환수금, 환수고지, 환수근거,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

제10조의 2(의원면직의 제한)(신설 2013.8.30)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3.8.30)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신설 2013.8.30)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처분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요구중인 때(신설 2013.8.30)

제11조(제재 집행) ① 혐의임원에 대한 제재수준이 의결되었을 경우, 이사회 담당부서장은 즉시 이를 당사자, 인사 및 급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성과급을 환수할 경우에는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에서 성과급 환수를 결정한 경우, 인사 및 급여담당부서장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환수금액, 환수사유 및 근거,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혐의임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재는 그 제재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되어야 한다.

④ 진흥원은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성과급 지급을 형의 확정시까지 유보할 수 있다. 단, 무혐의 확정시에는 유보된 금액에 유보된 기간동안 민법 제379조에 의한 법정이율의 경과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경제적 제재금액의 납부) 청렴의무 위반으로 경제적 제재가 확정된 임원은 이사회에서 제재수준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액을 현금 또는 진흥원은행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일을 경과하였을 경우 그 날로부터 납부 완료일까지 법정이자를 가산한다.

제13조(제재사유의 시효) ① 제재의결의 요구는 제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의 수수·요구
2. 업무상 횡령 및 배임

② 제10조에 의한 환수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청구) 임원이 청렴의무 위반으로 진흥원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제재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재심 청구) ① 제재를 받은 임원이 제재내용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제재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③ 재심에 의한 제재는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지 아니하는 한 원래의 제재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

제16조(운영부서) ① 임원의 청렴계약관련 업무는 이사회 담당부서에서 한다.

② 이사회 담당부서는 해당임원에 대한 각종 제재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제17조(이사회보고 및 운영현황 공개) 원장은 청렴계약제 운영현황, 실적 등을 이사회 등에 보고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임원 직무청렴의무 규정

부 칙(2009. 5.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 서식](개정 2013.8.30, 2014.2.28)

임원 직무청렴계약서

본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원으로서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이 진흥원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진흥원의 임원 직무청렴의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1.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규정에서 정한 청렴의무를 반드시 실천하고 진흥원 안팎에서 윤리적 행동을 견지하겠습니다.
2.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등 모든 내용은 이 계약과 일체를 이루고 있음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3.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상 처벌,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규정에서 정한 신분상 제재 및 경제적인 제재를 수용하겠습니다.
4. 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의견진술, 자료제출 등 심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6조에 의거 선임비상임이사와 해당 임원 간에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 계약당사자가 1부씩 보관하기로 합니다.

별첨 : 임원 직무청렴의무 규정 1부

년 월 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임비상임이사 ○ ○ ○
서명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 장 ○ ○ ○
서명 (인)

[별지 제1-2호 서식](신설 2014.2.28)

임원 직무청렴계약서

본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으로서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이 진흥원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진흥원의 임원 직무청렴의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1.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규정에서 정한 청렴의무를 반드시 실천하고 진흥원 안팎에서 윤리적 행동을 견지하겠습니다.
2.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등 모든 내용은 이 계약과 일체를 이루고 있음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3.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상 처벌,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규정에서 정한 신분상 제재 및 경제적인 제재를 수용하겠습니다.
4. 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의견진술, 자료제출 등 심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6조에 의거 원장과 해당 임원 간에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 계약당사자가 1부씩 보관하기로 합니다.

별첨 : 임원 직무청렴의무 규정 1부

년 월 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 장 ○ ○ ○
서명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감사 ○ ○ ○
서명 (인)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3.8.30, 2014.2.28)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직책수당 및 성과급(연봉 포함분 제외) 환수(지급유보) 고지**

인적사항	성 명	
	소속 및 직위	
환수/유보 대상		
환수/유보 금액		
납부계좌		
환수/유보 근거 및 사유		
납부/유보 기한		
<p>상기와 같이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선임비상임이사 ○ ○ ○ (인)</p>		

* 규정 제10조제1항제3호~제5호의 제재는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에게 미적용

[별표](개정 2014.2.28)

임원의 형사상 처벌에 따른 제재

처벌 정도	제재 내용
1. 금고이상의 형 판결 선고시	가. 금고이상의 형 판결 선고시 이후 지급될 성과급의 지급 유보 나. 서면으로 경고 또는 훈계
2. 벌금형 확정시	가. 의무 위반행위 발생 이후 포상의 취소 또는 취소 건의 나.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제재 - 포상수여 일정 기간 정지 - 임원경력확인발급 일정기간 정지 등
3. 자격정지 판결 확정시	가. 의무 위반 행위 발생 이후 지급 또는 지급될 성과급의 50%이내 환수 나. 의무 위반연도 이후 받은 포상의 취소 또는 취소 건의 다. 임원경력확인발급 일정기간 정지
4. 금고 이상의 형 판결 확정시	가. 의무 위반 행위 발생 이후 지급 또는 지급될 성과급의 50%이내 환수 나. 임원 퇴직금의 25%이내 지급제한 다. 의무 위반연도 이후 받은 포상의 취소 또는 취소 건의 라. 임원경력확인발급 일정기간 정지 마.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제재 - 임면권자에게 해임 건의 등

* 규정 제10조제1항제3호~제5호의 제재는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에게 미적용